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52
----------	-----

제출년월일 : 1999.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과태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을뿐 아니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읍·면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존치필요성이 없어 행정규제 정비추진계획에 의거 폐지

☐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96. 3. 1. 조례 제61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 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 3 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조 (부과기준 및 면제) ①시·읍·면장은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귀화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시·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 5 조 (부과 등) ①시·읍·면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시·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시·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서식의 과태료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읍·면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전징수) 시·읍·면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 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제 7 조 (납부독촉) 시·읍·면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체납처분) 시·읍·면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제 9 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대 상(제3조관련)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 태 료 금 액	
		법 제130조해당	법 제131조 해당
1. 출생일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출생신고)	법 제49조 법 제51조	50,000원	100,000원
2. 기아를 찾은날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적정정신청)	법 제58조	50,000원	100,000원
3. 재판의 확정일 부터 1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63조	50,000원	100,000원
4. 유언집행자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64조	50,000원	100,000원
5. 사산사실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지태아의 사산신고)	법 제65조	50,000원	100,000원
6.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입양 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양취소신고)	법 제71조	50,000원	100,000원
7.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법 제75조	50,000원	100,000원
8.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법 제76조 의 2	50,000원	100,000원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 태 료 금 액	
		법 제130조해당	법 제131조 해당
9.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혼인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혼인취소신고)	법 제78조	50,000원	100,000원
10.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법 제81조	50,000원	100,000원
11.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날부터 1월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모의 친권자변동신고)	법 제82조 제1항	50,000원	100,000원
12.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지정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지정 변경에 따른 친권자 변동신고)	법 제82조 제2항	50,000원	100,000원
13. 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개시 신고)	법 제83조	50,000원	100,000원
14. 후임자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인 경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인 경질신고)	법 제84조	50,000원	100,000원
15. 후견 종료일부터 11월이내에 후견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 종료신고)	법 제86조	50,000원	100,000원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 태 료 금 액	
		법 제130조해당	법 제131조 해당
16. 사망의 사실을 안날(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사망신고)	법 제87조	50,000원	100,000원
17. 사망자를 인식한날부터 10일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본직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법 제93조	50,000원	100,000원
18. 재판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실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신고)	법 제95조	50,000원	100,000원
19. 호주승계의 사실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신고)	법 제96조	50,000원	100,000원
20.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호주승계신고)	법 제96조 제3항	50,000원	100,000원
21.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호주승계 획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 획득신고)	법 제100조	50,000원	100,000원
22.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일가창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일가창립의 신고)	법 제106조	50,000원	100,000원
23. 국적법 제11조에 의한 고시일부터 1월이내에 귀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상실신고)	법 제109조	50,000원	100,000원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법 제130조해당	법 제131조 해당
24. 국적 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상실신고)	법 제110조	50,000원	100,000원
25. 법무부장관의 허가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회복 신고)	법 제112조	50,000원	100,000원
26.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명신고)	법 제113조	50,000원	100,000원
27.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취적신고)	법 제116조	50,000원	100,000원
28.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취적신고)	법 제118조	50,000원	100,000원
29. 호적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허가의 호적정정신청)	법 제122조	50,000원	100,000원
30.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신청)	법 제123조	50,000원	100,000원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4조 제1항 관련)

해 태 기 간	과 태 료	
	제 130 조 위반	제 131 조 위반
1원미만	10,000원	20,000원
1월이상 3원미만	20,000원	40,000원
3월이상 6원미만	30,000원	6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해 태 이 유 서

1. 신고(또는 신청)의무자

성 명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본 적 :

주 소 :

2.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성 명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신고(또는 신청)의무자와의 관계

3. 사건 발생상황

사건의 표시

사건발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사건신고년월일 : 19 년 월 일

해 태 기 간(1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

년 월 일

진 술 인 (인)

시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납 부 통 지 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호적과태료)
해 태 사 항		
금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창구 전국 우체국(한은, 신한, 제외)
위의 금액을 호적법 제130조의2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 ○○ 시(읍·면)장		수입일부인

A 80×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1)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호적과태료)
해 태 사 항		
금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 은행 ○○ 지점 파주시장수관 귀하		수입일부인

A 80×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2)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호적과태료)
해 태 사 항		
금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 은행 ○○ 지점 파 주 시 금 고 귀 하		수입일부인

A 80×160mm
신문용지 54g/㎡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호적과태료)
해 태 사 항		
금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 은행 ○○ 지점		수입일부인

A 80×16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결 정 자 료 부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		위반조항 ①	과태료액 ②	해 태 기 간				비 고
주 소	성 명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268mm × 190mm (인쇄용지 2급 60g/㎡)

* 작성 요령

- ①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와 별표 1의 근거 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
- ② 과태료 액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산정금액 기입

(별지 제5호 서식)

납 부 통 지 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호적과태료)
해 태 사 항		
금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창구 전국 우체국(한은, 신한, 제외)
위의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위와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 의이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19 ○ ○ 시(읍·면)장		수입일부인

A 80×160mm

신문용지 54 g/m²

영수필통지서(1)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호적과태료)
해 태 사 항		
금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 은행 ○○ 지점 파주시징수관 귀하		수입일부인

A 80×160mm

신문용지 54 g/m²

영수필통지서(2)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호적과태료)
해 태 사 항		
금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 은행 ○○ 지점 파 주 시 금 고 귀 하		수입일부인 □□□□□□□□

A 80×160mm
신문용지 54g/m²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호적과태료)
해 태 사 항		
금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 은행 ○○ 지점		수입일부인 □□□□□□□□

A 80×160mm
신문용지 54g/m²